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수 산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2020년 8월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추진(2022년 1월 11일 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구보증금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의 대상 및 보증금 환급 등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어업인의 편의 및 수산관계법령 이해 제고를 위해 조업(금지)구역 표기방식을 기존 육지(지명)기점에서 경위도 좌표로 개선하는 한편, 조업 중 안전확보를 위한 규제개선, 미국의 수입 규제 시행에 따라 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양식장형망선 명칭 수정 (안 제14조 및 별표1)

「양식산업발전법」 분법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분법 전에 사용하던 “양식장형망선”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조문 정비

나. 신고어업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도구와 조업시기 및 조업구역 등을 별도로 정함 (안 제26조)

신고어업에 사용 가능한 도구의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고, 수면관리
권자인 지자체 자율로 조업시기와 조업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

다. 미국 수출허가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32조)

美 해양포유류방지법(MMPA)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수입 규제에 대응
하여 행정절차 및 제1항 각호의 제한·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우리나라 수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

라. 법령체계 정비(안 제38조)

상하위 법령 간 근거규정의 이탈자를 바로잡음

마. 어구보증금제도의 도입(안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5까지)

- 1) 어구보증금 부과대상의 범위를 폐기 및 유실률이 높은 연안통발,
근해통발어구로 한정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49조의2)
- 2) 자연재난, 재해 등의 사유로 어구를 구입한 자가 어구를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안 제49조의3)
- 3)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
49조의4)
- 4)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과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사항을 명시
(안 제49조의5)

바. 수산부산물 처리업 지원 근거 명확화(안 제58조)

제4호 수산물 처리의 범주에 수산부산물 처리도 포함 되는 것으로 해

석하여 왔으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으로 인해 법령 해석에 혼동을 줄 수 있어 수산부산물 처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사. 업무의 위탁 신설(안 제74조의2)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제의 세부 이행을 위한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구체적 사업 내용,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업무의 위탁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아. 과태료 기준 정비(안 별표 12)

법 제11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위반횟수별로 구분하여 정하고자 함

자. 조업구역 표기방식 정비(안 별표 5 및 별표 7)

일부 조업(금지)구역이 육지(지명) 기점으로 표기되어 시대적·지리적 변화로 어업인 등이 정확한 구역 경계 확인에 한계가 있어 조업(금지)구역 표기방식을 기존 육지(지명) 기점에서 경위도 좌표로 개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양식장형망선”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한다.

제2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도구를, 수면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업시기와 조업구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수산물 수출의 제한이나 금지. 이 경우 수산물 수출의 제한이나 금지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법 제60조제1항”을 각각 “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7장에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어구보증금의 부과 대상)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 또는 부표를 말한다.

1.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2.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제49조의3(보증금환급의 예외 적용) ① 법 제81조제2항 단서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어구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구등을 구입한 자가 어구등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법 제83조제1항의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어구보증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어구보증금 환급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4(어구보증금관리센터 설치·운영) ① 법 제83조제1항의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둔다.

② 법 제83조제3항에서 “어구보증금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74조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9조의5(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 등) ① 법 제84조제2항에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구 회수 및 재활용 지원사업

2. 어구보증금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활용

3. 어구보증금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어업인 지원

4. 어구보증금 관련 산업의 육성

5. 그 밖에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사업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가 제1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정하여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사업 운영실적 또는 경비지출 명세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제4호 중 “수산물”을 “수산물·수산부산물의”로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또는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폐어구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

3.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

4.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 위탁대상 사업의 범위
2. 위탁대상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기간(계약기간의 수정·갱신 및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위탁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 일부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처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8조 중 “법 제11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112조”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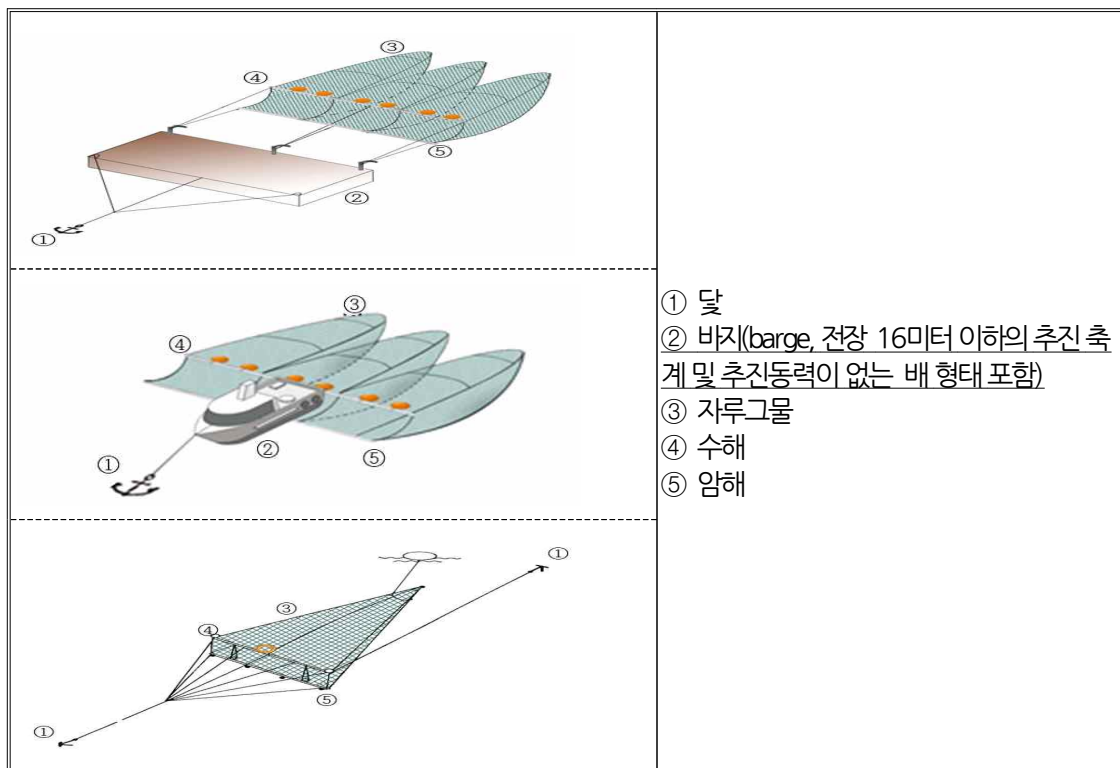
마을 어업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마을어장형망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형망선, 자원관리채취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별표 1 비고 제1호 중 ““양식장형망선”이란”을 ““마을어장형망선”이란”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 카목 1) 중 “가) 자루그물로 또는 자루그물과 바지(barge)로 구성된 어구 ”를 “가)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적합한 어구

(1)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2) 자루그물과바지(barge,전장16미터이하의추진축계및추진동력이없는배형태포함)로구성된어구”로 하고, [부도 카-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가인포 감부터 금남면 대도 서단을 거쳐 남해군 고현면 행기섬 북단과 하동군 금남면 장도 남단 및 남해군 설천면 개구리섬 북단을 거쳐 남해대교 남단에 이르는 선, 경상남도 남해군 남현 홍현리 가천 최남단으로부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동 동단과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등대”를 “북위34도56분50.30초 동경127도50분47.92초부터 북위34도56

분22.96초 동경127도49분52.37초를 거쳐, 북위34도55분06.20초 동경127도49분16.22초와 북위34도55분26.73초 동경127도50분24.97초 및 북위34도56분24.96초 동경127도51분25.40초를 거쳐, 북위34도56분28.67초 동경127도52분17.95초에 이르는 선과, 북위34도43분18.27초 동경127도53분27.44초부터, 북위34도43분00.87초 동경127도47분09.46초와 북위34도44분39.52초 동경127도46분04.03초”로, “오동도 등대부터 여수시 낙포동 사포리 낙포각 등대 동단에 이르는 해안선을 거쳐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염해 서단에 이르는 직선의 중간점을”을 “북위34도44분39.52초 동경127도46분04.03초부터 북위34도51분22.90초 동경127도46분33.50초에 이르는 해안선을 거쳐 북위34도43분09.61초 동경127도50분18.44초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홍현리 가천 최남단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동 동단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중간점으로부터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동 동단과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 등대”를 “북위34도43분09.61초 동경127도50분18.44초부터 북위34도43분00.87초 동경127도47분09.46초와 북위34도44분39.52초 동경127도46분04.03초”로, “오동도 등대로부터 여수시 낙포동 사포리 낙포각 등대 동단에 이르는 해안선을 거쳐 낙포각 등대 동단으로부터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염해 서단에 이르는 직선의 중간점”을 “북위34도44분39.52초 동경127도46분04.03초로부터 북위34도51분22.90초 동경127도46분33.50초에 이르는 해안선을 거쳐 북위34도51분24.75초, 동경127도47분30.09초”로 한다.

가.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하는 30척 범위와 경상남도지사가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30척 범위에서 조업할 수 있다.

1)북위34도56분28.67초,동경127도52분17.95초

2)북위34도56분24.96초,동경127도51분25.40초

3)북위34도55분26.73초,동경127도50분24.97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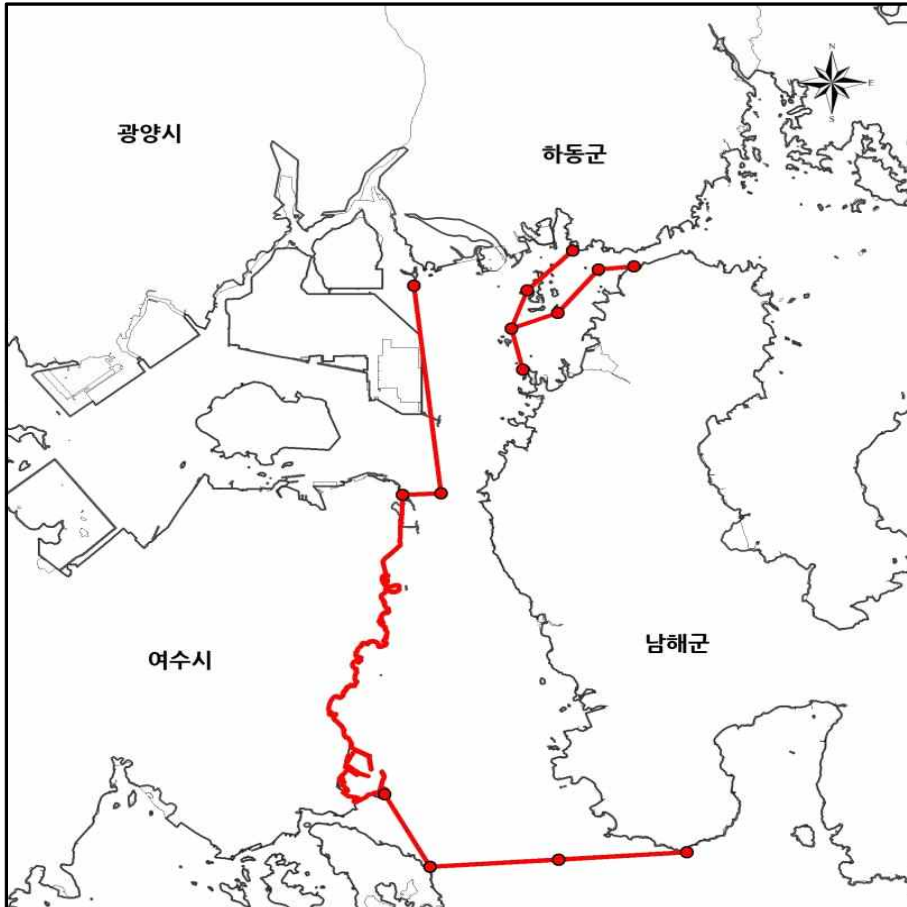
4)북위34도55분06.20초,동경127도49분16.22초

5)북위34도54분10.69초,동경127도49분32.66초

별표 5 부도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도]

잠수기어선의 공동조업구역도



별표 7 제3호에 가목, 가목, 가목부터 다목까지, 가목부터 마목까지,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의 도 경계와 해안선의 교차점에서 정남 7해리의 수계, 함경남도 북청면 마양도등대 남동 15해리의 수계, 함경남도 영흥군 호도면 성황치 단에서 동 10도 북 24해리의 수계를 거쳐 성황치에 이르는”을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으로 하며, 같은 목에 1)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만갑 동쪽 끝과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갑 서북쪽 끝을”을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로 하며, 같은 목

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북위34도44분21.48초, 동경127도33분53.43초

가. 북위34도39분05.89초, 동경127도11분47.23초

가. 북위35도15분02.07초, 동경126도18분29.78초

나. 북위35도18분01.04초, 동경126도08분28.59초

다. 북위35도34분14.87초, 동경126도15분44.35초

가. 북위38도34분24.04초, 동경128도23분40.56초

나. 북위38도34분23.87초, 동경128도48분17.63초

다. 북위38도00분29.40초, 동경129도09분17.72초

라. 북위37도13분43.02초, 동경129도46분15.46초

마. 북위37도08분35.54초, 동경129도46분59.59초

가. 북위34도40분50.30초, 동경128도34분43.47초

나. 북위34도23분39.76초, 동경127도49분11.33초

1) 북위40도27분16.39초, 동경129도09분18.87초

2) 북위39도49분39.78초, 동경128도26분33.02초

3) 북위39도21분52.82초, 동경128도03분59.58초

4) 북위39도17분42.69초, 동경127도33분33.02초

나.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35도59분29.63초, 동경129도34분05.54초

2) 북위35도51분12.35초, 동경129도31분32.91초

나.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35도59분29.63초, 동경129도34분05.54초

2) 북위35도51분12.35초, 동경129도31분32.91초

다.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35도39분04.22초, 동경129도27분04.06초

2) 북위35도38분51.36초, 동경129도28분21.94초

3) 북위35도28분34.75초, 동경129도29분39.02초

4) 북위35도21분11.21초, 동경129도22분59.49초

5) 북위35도10분53.70초, 동경129도13분49.21초

6) 북위35도02분20.04초, 동경129도06분24.37초

7) 북위34도51분54.45초, 동경128도47분02.99초

8) 북위34도47분12.12초, 동경128도45분36.17초

9) 북위34도42분44.26초, 동경128도41분26.29초

10) 북위34도40분54.36초, 동경128도37분13.15초

11) 북위34도40분50.30초, 동경128도34분43.47초

12) 북위34도41분34.23초, 동경128도27분25.94초

13) 북위34도41분37.59초, 동경128도23분50.15초

14) 북위34도44분44.48초, 동경128도18분10.59초

15) 북위34도42분40.76초, 동경128도10분31.23초

- 16) 북위34도39분46.65초, 동경128도02분44.04초
- 17) 북위34도42분14.11초, 동경127도53분26.09초
- 18) 북위34도37분36.42초, 동경127도51분15.99초
- 19) 북위34도24분02.47초, 동경127도47분04.20초
- 20) 북위34도12분44.14초, 동경127도15분26.78초
- 21) 북위34도08분48.32초, 동경126도54분00.00초
- 22) 북위34도05분01.96초, 동경126도40분12.78초
- 23) 북위34도05분52.80초, 동경126도36분08.70초
- 24) 북위34도07분19.07초, 동경126도30분43.10초
- 25) 북위34도13분22.96초, 동경126도25분06.59초
- 26) 북위34도18분42.20초, 동경126도05분16.10초
- 27) 북위34도25분07.09초, 동경126도05분21.33초

라.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34도35분19.76초, 동경126도14분59.45초
- 2) 북위34도40분45.54초, 동경126도15분18.81초

나.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12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 1) 북위39도02분09.47초, 동경128도06분47.00초
- 2) 북위38도41분11.90초, 동경128도25분21.76초
- 3) 북위38도27분00.20초, 동경128도32분58.40초
- 4) 북위38도10분51.79초, 동경128도40분34.36초

- 5) 북위38도00분49.88초, 동경128도49분05.38초
- 6) 북위37도40분26.16초, 동경129도08분22.01초
- 7) 북위37도03분31.06초, 동경129도38분07.50초
- 8) 북위36도46분03.82초, 동경129도29분58.13초

다.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5월로 한정한다)

- 1) 북위39도48분12.06초, 동경124도11분12.29초
- 2) 북위39도46분38.93초, 동경123도54분29.98초
- 3) 북위38도23분01.47초, 동경124도34분50.98초
- 4) 북위38도11분19.97초, 동경124도45분49.77초

주2) 북위38도00분09.86초 동경125도49분52.80초, 북위34도00분11.50초 동경125도49분52.90초, 북위34도00분11.54초 동경127도59분52.23초, 북위34도30분11.34초 동경127도59분52.21초, 북위34도30분11.36초 동경128도59분51.90초, 북위35도38분55.10초 동경129도34분20.92초, 북위36도04분39.45초 동경129도41분26.94초, 북위37도03분37.71초 동경129도33분03.44초, 북위37도14분06.39초 동경129도28분41.81초, 북위37도40분23.47초 동경129도10분48.48초, 북위38도26분52.66초 동경128도35분36.41초와 북위38도41분14.63초 동경128도21분31.94초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라말 이북에서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말 이남까지의 해역 중 북위35도59분29.73초, 동경129도37분44.64초, 북위36도04분39.45초, 동경129도37분47.89초, 북위36도13분23.87초, 동경129도33분02.30초, 북위36도30분26.85초, 동경129도31분59.83

초, 북위37도03분39.27초, 동경129도31분50.65초, 북위37도14분09.91초, 동경129도27분28.86초, 북위37도40분23.47초, 동경129도09분37.09초와 북위38도26분54.65초, 동경128도33분08.00초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밖의 해역에서 소형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3)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36도06분38.30초, 동경129도26분22.99초

2) 북위36도05분06.28초, 동경129도32분50.36초

나. 북위34도40분58.22초, 동경127도26분43.88초

주13)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35도39분04.22초, 동경129도27분04.06초

2) 북위35도38분51.36초, 동경129도28분21.94초

3) 북위35도29분10.31초, 동경129도27분48.32초

4) 북위35도21분11.21초, 동경129도22분59.49초

5) 북위35도10분52.97초, 동경129도14분28.70초

6) 북위35도01분36.28초, 동경129도06분09.92초

7) 북위35도01분30.65초, 동경128도58분24.10초

8) 북위34도53분42.06초, 동경128도47분43.97초

9) 북위34도47분12.12초, 동경128도45분36.17초

10) 북위34도42분44.26초, 동경128도41분26.29초

11) 북위34도40분54.36초, 동경128도37분13.15초

- 12) 북위34도40분50.30초, 동경128도34분43.47초
- 13) 북위34도41분34.23초, 동경128도27분25.94초
- 14) 북위34도41분37.59초, 동경128도23분50.15초
- 15) 북위34도44분44.48초, 동경128도18분10.59초
- 16) 북위34도42분40.76초, 동경128도10분31.23초
- 17) 북위34도39분46.65초, 동경128도02분44.04초
- 18) 북위34도42분14.11초, 동경127도53분26.09초
- 19) 북위34도37분36.42초, 동경127도51분15.99초
- 20) 북위34도31분52.34초, 동경127도50분34.90초
- 21) 북위34도23분39.76초, 동경127도49분11.33초
- 22) 북위34도24분03.98초, 동경127도46분17.71초
- 23) 북위34도29분25.93초, 동경127도44분08.71초
- 24) 북위34도32분21.21초, 동경127도38분22.27초
- 25) 북위34도34분25.25초, 동경127도29분13.34초

라. 북위34도05분52.80초, 동경126도36분08.70초

주4) 대형선망어업 및 소형선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구역(부도 1 참조)

라. 북위35도23분00.39초, 동경126도23분53.12초

주15)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마.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34도04분10.64초, 동경127도16분21.12초
- 2) 북위34도02분11.97초, 동경127도15분35.82초

- 3) 북위34도00분07.41초, 동경127도16분43.46초
- 4) 북위34도02분22.60초, 동경127도21분15.05초
- 5) 북위34도04분23.88초, 동경127도20분11.15초
- 6) 북위34도04분53.18초, 동경127도17분34.56초
- 7) 북위34도04분10.64초, 동경127도16분21.12초

바.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34도14분07.54초, 동경126도53분21.37초
- 2) 북위34도13분08.91초, 동경126도55분44.16초
- 3) 북위34도11분20.39초, 동경126도57분06.92초
- 4) 북위34도10분38.80초, 동경126도56분47.26초
- 5) 북위34도08분11.55초, 동경126도50분32.62초
- 6) 북위34도12분44.65초, 동경126도49분30.95초
- 7) 북위34도14분07.54초, 동경126도53분21.37초

별표 7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만갑 동쪽 끝과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갑 서북쪽 끝을”을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로 하며,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 다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카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목(종전의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북위37도08분46.65초, 동경129도21분50.14초

주11)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2 참조)

사.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34도16분08.14초, 동경126도36분45.06초
- 2) 북위34도10분52.74초, 동경126도42분25.01초
- 3) 북위34도08분54.72초, 동경126도42분17.71초
- 4) 북위34도06분01.99초, 동경126도40분41.16초
- 5) 북위34도04분47.89초, 동경126도36분09.00초
- 6) 북위34도06분29.15초, 동경126도29분53.23초
- 7) 북위34도16분01.40초, 동경126도33분47.38초
- 8) 북위34도16분08.14초, 동경126도36분45.06초

아.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33도59분06.56초, 동경126도15분00.93초
- 2) 북위33도58분50.32초, 동경126도21분05.28초
- 3) 북위33도56분56.83초, 동경126도21분52.61초
- 4) 북위33도54분53.81초, 동경126도19분37.63초
- 5) 북위33도59분06.56초, 동경126도15분00.93초

주5)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금오도, 남면 안도, 남면 연도 및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의 해안선으로부터 550미터 선 안의 해역

주6) 북위34도59분19.02초 동경128도49분42.30초와 북위34도53분43.48초 동경128도45분06.82초를 연결하는 선과 북위34도53분22.50초 동경128도28분32.43초 및 북위34도53분06.80초 동경128도28분40.60초를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7) 주6)의 해역을 제외한 경상남도의 해역과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해역

주8) 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구역(부도 1 참조)

1) 북위36도06분38.30초, 동경129도26분22.99초

2) 북위36도05분06.28초, 동경129도32분50.36초

나. 북위34도41분31.68초, 동경127도10분31.29초

주14)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 북위33도57분52.83초, 동경127도20분25.54초

라.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34도31분07.80초, 동경127도10분14.07초

2) 북위34도26분43.54초, 동경126도57분57.49초

3) 북위34도24분15.40초, 동경126도58분04.52초

4) 북위34도24분15.68초, 동경126도57분04.19초

마. 북위34도21분12.07초 동경126도54분30.30초와 북위34도20분32.2

6초 동경126도53분56.87초를 연결한 선, 북위34도18분55.34초 동

경126도47분38.20초와 북위34도17분15.62초 동경126도46분39.59

초를 연결한 선 및 북위34도23분11.21초 동경126도38분35.73초와

북위34도23분14.89초, 동경126도38분13.76초를 연결한 선 안의 해

역

바.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34도04분16.23초, 동경127도16분02.82초

- 2) 북위34도02분16.01초, 동경127도14분57.14초
- 3) 북위34도01분54.81초, 동경127도20분39.02초
- 4) 북위33도57분52.83초, 동경127도20분25.54초
- 5) 북위34도02분31.34초, 동경127도23분14.40초
- 6) 북위34도04분34.91초, 동경127도20분26.45초
- 7) 북위34도04분36.95초, 동경127도17분34.51초
- 8) 북위34도04분16.23초, 동경127도16분02.82초

주9) 북위34도45분14.58초 동경127도39분41.38초, 북위34도44분26.13초 동경127도39분48.15초, 북위34도42분41.26초 동경127도42분03.74초, 북위34도41분00.32초 동경127도38분21.35초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과 북위34도03분46.49초 동경127도18분21.56초와 북위34도03분48.55초 동경127도17분35.12초를 연결한 선과 북위34도00분19.18초 동경127도19분29.65초, 북위34도01분59.90초 동경127도19분53.48초를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10)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하. 북위35도39분00초 동경129도26분52초

주12)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1) 동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끝이중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별도 참조)

가.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15일까지로 한정한다)

- 1) 북위40도27분16.39초, 동경129도09분18.87초
- 2) 북위39도49분39.78초, 동경128도26분33.02초

3) 북위39도21분52.82초, 동경128도03분59.58초

4) 북위39도17분42.69초, 동경127도33분33.02초

나.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12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1) 북위39도02분09.47초, 동경128도06분47.00초

2) 북위38도41분11.90초, 동경128도25분21.76초

3) 북위38도27분00.20초, 동경128도32분58.40초

4) 북위38도10분51.79초, 동경128도40분34.36초

5) 북위38도00분49.88초, 동경128도49분05.38초

6) 북위37도40분26.16초, 동경129도08분22.01초

7) 북위37도03분31.06초, 동경129도38분07.50초

8) 북위36도46분03.82초, 동경129도29분58.13초

다.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5월로 한정한다)

1) 북위39도48분12.06초, 동경124도11분12.29초

2) 북위39도46분38.93초, 동경123도54분29.98초

3) 북위38도23분01.47초, 동경124도34분50.98초

4) 북위38도11분19.97초, 동경124도45분49.77초

주2) 북위38도00분09.86초 동경125도49분52.80초, 북위34도00분11.50초 동경125도49분52.90초, 북위34도00분11.54초 동경127도59분52.23초, 북위34도30분11.34초 동경127도59분52.21초, 북위34도30분11.36초 동경128도59분51.90초, 북위35도38분55.10초 동경129도34분20.92초, 북위36도04분39.45초 동경129도41분26.94초, 북위37도03분37.71초 동경129도33분03.44초, 북위37도14분06.39초 동경129도28분41.81초, 북위37도40분23.47초 동경129도10분48.48초, 북위38도26분52.66초 동경128도35분36.41초와 북위38도41분14.63초 동경128도21분31.94초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라말 이북에서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말 이남까지의 해역 중 북위35도59분29.73초, 동경129도37분44.64초, 북위36도04분39.45초, 동경129도37분47.89초, 북위36도13분23.87초, 동경129도33분02.30초, 북위36도30분26.85초, 동경129도31분59.83초, 북위37도03분39.27초, 동경129도31분50.65초, 북위37도14분09.91초, 동경129도27분28.86초, 북위37도40분23.47초, 동경129도09분37.09초와 북위38

도26분54.65초, 동경128도33분08.00초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밖의 해역에서 소형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3)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34도40분50.30초, 동경128도34분43.47초

나. 북위34도23분39.76초, 동경127도49분11.33초

다. 북위33도57분52.83초, 동경127도20분25.54초

라. 북위34도05분52.80초, 동경126도36분08.70초

주4) 대형선망어업 및 소형선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구역(부도 1 참조)

가.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36도06분38.30초, 동경129도26분22.99초

2) 북위36도05분06.28초, 동경129도32분50.36초

나.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35도59분29.63초, 동경129도34분05.54초

2) 북위35도51분12.35초, 동경129도31분32.91초

다.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35도39분04.22초, 동경129도27분04.06초

2) 북위35도38분51.36초, 동경129도28분21.94초

3) 북위35도28분34.75초, 동경129도29분39.02초

4) 북위35도21분11.21초, 동경129도22분59.49초

5) 북위35도10분53.70초, 동경129도13분49.21초

6) 북위35도02분20.04초, 동경129도06분24.37초

7) 북위34도51분54.45초, 동경128도47분02.99초

8) 북위34도47분12.12초, 동경128도45분36.17초

9) 북위34도42분44.26초, 동경128도41분26.29초

10) 북위34도40분54.36초, 동경128도37분13.15초

11) 북위34도40분50.30초, 동경128도34분43.47초

12) 북위34도41분34.23초, 동경128도27분25.94초

13) 북위34도41분37.59초, 동경128도23분50.15초

14) 북위34도44분44.48초, 동경128도18분10.59초

- 15) 북위34도42분40.76초, 동경128도10분31.23초
- 16) 북위34도39분46.65초, 동경128도02분44.04초
- 17) 북위34도42분14.11초, 동경127도53분26.09초
- 18) 북위34도37분36.42초, 동경127도51분15.99초
- 19) 북위34도24분02.47초, 동경127도47분04.20초
- 20) 북위34도12분44.14초, 동경127도15분26.78초
- 21) 북위34도08분48.32초, 동경126도54분00.00초
- 22) 북위34도05분01.96초, 동경126도40분12.78초
- 23) 북위34도05분52.80초, 동경126도36분08.70초
- 24) 북위34도07분19.07초, 동경126도30분43.10초
- 25) 북위34도13분22.96초, 동경126도25분06.59초
- 26) 북위34도18분42.20초, 동경126도05분16.10초
- 27) 북위34도25분07.09초, 동경126도05분21.33초

라.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34도35분19.76초, 동경126도14분59.45초
- 2) 북위34도40분45.54초, 동경126도15분18.81초

마.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34도04분10.64초, 동경127도16분21.12초
- 2) 북위34도02분11.97초, 동경127도15분35.82초
- 3) 북위34도00분07.41초, 동경127도16분43.46초
- 4) 북위34도02분22.60초, 동경127도21분15.05초
- 5) 북위34도04분23.88초, 동경127도20분11.15초
- 6) 북위34도04분53.18초, 동경127도17분34.56초
- 7) 북위34도04분10.64초, 동경127도16분21.12초

바.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34도14분07.54초, 동경126도53분21.37초
- 2) 북위34도13분08.91초, 동경126도55분44.16초
- 3) 북위34도11분20.39초, 동경126도57분06.92초
- 4) 북위34도10분38.80초, 동경126도56분47.26초
- 5) 북위34도08분11.55초, 동경126도50분32.62초
- 6) 북위34도12분44.65초, 동경126도49분30.95초

7) 북위34도14분07.54초, 동경126도53분21.37초

사.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34도16분08.14초, 동경126도36분45.06초
- 2) 북위34도10분52.74초, 동경126도42분25.01초
- 3) 북위34도08분54.72초, 동경126도42분17.71초
- 4) 북위34도06분01.99초, 동경126도40분41.16초
- 5) 북위34도04분47.89초, 동경126도36분09.00초
- 6) 북위34도06분29.15초, 동경126도29분53.23초
- 7) 북위34도16분01.40초, 동경126도33분47.38초
- 8) 북위34도16분08.14초, 동경126도36분45.06초

아.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33도59분06.56초, 동경126도15분00.93초
- 2) 북위33도58분50.32초, 동경126도21분05.28초
- 3) 북위33도56분56.83초, 동경126도21분52.61초
- 4) 북위33도54분53.81초, 동경126도19분37.63초
- 5) 북위33도59분06.56초, 동경126도15분00.93초

주5)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금오도, 남면 안도, 남면 연도 및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의 해안선으로부터 550미터 선 안의 해역

주6) 북위34도59분19.02초 동경128도49분42.30초와 북위34도53분43.48초 동경128도45분06.82초를 연결하는 선과 북위34도53분22.50초 동경128도28분32.43초 및 북위34도53분06.80초 동경128도28분40.60초를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7) 주6)의 해역을 제외한 경상남도의 해역과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해역

주8) 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구역(부도 1 참조)

가.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36도06분38.30초, 동경129도26분22.99초
- 2) 북위36도05분06.28초, 동경129도32분50.36초

나.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35도59분29.63초, 동경129도34분05.54초
- 2) 북위35도51분12.35초, 동경129도31분32.91초

다.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35도39분04.22초, 동경129도27분04.06초
- 2) 북위35도38분51.36초, 동경129도28분21.94초
- 3) 북위35도29분10.31초, 동경129도27분48.32초
- 4) 북위35도21분11.21초, 동경129도22분59.49초
- 5) 북위35도10분52.97초, 동경129도14분28.70초
- 6) 북위35도01분36.28초, 동경129도06분09.92초
- 7) 북위35도01분30.65초, 동경128도58분24.10초
- 8) 북위34도53분42.06초, 동경128도47분43.97초
- 9) 북위34도47분12.12초, 동경128도45분36.17초
- 10) 북위34도42분44.26초, 동경128도41분26.29초
- 11) 북위34도40분54.36초, 동경128도37분13.15초
- 12) 북위34도40분50.30초, 동경128도34분43.47초
- 13) 북위34도41분34.23초, 동경128도27분25.94초
- 14) 북위34도41분37.59초, 동경128도23분50.15초
- 15) 북위34도44분44.48초, 동경128도18분10.59초
- 16) 북위34도42분40.76초, 동경128도10분31.23초
- 17) 북위34도39분46.65초, 동경128도02분44.04초
- 18) 북위34도42분14.11초, 동경127도53분26.09초
- 19) 북위34도37분36.42초, 동경127도51분15.99초
- 20) 북위34도31분52.34초, 동경127도50분34.90초
- 21) 북위34도23분39.76초, 동경127도49분11.33초
- 22) 북위34도24분03.98초, 동경127도46분17.71초
- 23) 북위34도29분25.93초, 동경127도44분08.71초
- 24) 북위34도32분21.21초, 동경127도38분22.27초
- 25) 북위34도34분25.25초, 동경127도29분13.34초

라.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34도31분07.80초, 동경127도10분14.07초

2) 북위34도26분43.54초, 동경126도57분57.49초

3) 북위34도24분15.40초, 동경126도58분04.52초

4) 북위34도24분15.68초, 동경126도57분04.19초

마. 북위34도21분12.07초 동경126도54분30.30초와 북위34도20분32.26초 동경126도53분56.87초를 연결한 선, 북위34도18분55.34초 동경126도47분38.20초와 북위34도17분15.62초 동경126도46분39.59초를 연결한 선 및 북위34도23분11.21초 동경126도38분35.73초와 북위34도23분14.89초, 동경126도38분13.76초를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바.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34도04분16.23초, 동경127도16분02.82초

2) 북위34도02분16.01초, 동경127도14분57.14초

3) 북위34도01분54.81초, 동경127도20분39.02초

4) 북위33도57분52.83초, 동경127도20분25.54초

5) 북위34도02분31.34초, 동경127도23분14.40초

6) 북위34도04분34.91초, 동경127도20분26.45초

7) 북위34도04분36.95초, 동경127도17분34.51초

8) 북위34도04분16.23초, 동경127도16분02.82초

주9) 북위34도45분14.58초 동경127도39분41.38초, 북위34도44분26.13초 동경127도39분48.15초, 북위34도42분41.26초 동경127도42분03.74초, 북위34도41분00.32초 동경127도38분21.35초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과 북위34도03분46.49초 동경127도18분21.56초와 북위34도03분48.55초 동경127도17분35.12초를 연결한 선과 북위34도00분19.18초 동경127도19분29.65초, 북위34도01분59.90초 동경127도19분53.48초를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10)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38도34분24.04초, 동경128도23분40.56초

나. 북위38도34분23.87초, 동경128도48분17.63초

다. 북위38도00분29.40초, 동경129도09분17.72초

라. 북위37도13분43.02초, 동경129도46분15.46초

마. 북위37도08분35.54초, 동경129도46분59.59초

바. 북위37도08분46.65초, 동경129도21분50.14초

주11)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2 참조)

가. 북위37도08분37초 동경129도21분52초

나. 북위37도08분37초 동경129도45분12초

다. 북위37도06분12초 동경129도45분12초

라. 북위36도41분27초 동경129도51분24초

마. 북위36도28분18초 동경129도53분08초

바. 북위36도19분30초 동경129도51분06초

사. 북위36도11분13초 동경129도48분48초

아. 북위36도06분57초 동경129도45분44초

자. 북위35도58분46초 동경129도44분01초

차. 북위35도55분37초 동경129도43분14초

카. 북위35도49분04초 동경129도44분27초

타. 북위35도46분01초 동경129도46분21초

파. 북위35도39분00초 동경130도00분15초

하. 북위35도39분00초 동경129도26분52초

주12)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34도44분21.48초, 동경127도33분53.43초

나. 북위34도40분58.22초, 동경127도26분43.88초

주13)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34도39분05.89초, 동경127도11분47.23초

나. 북위34도41분31.68초, 동경127도10분31.29초

주14)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가. 북위35도15분02.07초, 동경126도18분29.78초
- 나. 북위35도18분01.04초, 동경126도08분28.59초
- 다. 북위35도34분14.87초, 동경126도15분44.35초
- 라. 북위35도23분00.39초, 동경126도23분53.12초

주15)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가. 북위33도24분40초 동경126도12분15초
- 나. 북위33도25분09초 동경126도12분23초
- 다. 북위33도25분37초 동경126도13분00초
- 라. 북위33도25분38초 동경126도13분47초
- 마. 북위33도10분23초 동경126도15분27초
- 바. 북위33도09분36초 동경126도15분18초
- 사. 북위33도09분05초 동경126도16분17초
- 아. 북위33도09분38초 동경126도16분50초
- 자. 북위33도09분45초 동경126도17분24초
- 차. 북위33도10분18초 동경126도17분49초
- 카. 북위33도31분17초 동경126도56분09초
- 타. 북위33도31분50초 동경126도57분18초
- 파. 북위33도30분55초 동경126도58분35초
- 하. 북위33도29분53초 동경126도58분53초
- 거. 북위33도28분59초 동경126도57분47초

주16)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4 참조)

- 가. 북위37도36분00초 동경126도12분20초
- 나. 북위37도23분30초 동경126도20분40초
- 다. 북위37도20분00초 동경126도23분30초
- 라. 북위37도12분20초 동경126도23분30초
- 마. 북위37도10분05초 동경126도30분00초
- 바. 북위37도07분15초 동경126도30분00초
- 사. 북위37도05분30초 동경126도22분00초
- 아. 북위36도55분00초 동경126도06분30초

자. 북위36도48분00초 동경126도03분50초
 차. 북위36도41분10초 동경126도05분35초
 카. 북위36도38분00초 동경126도05분30초
 타. 북위36도33분30초 동경126도14분30초
 파. 북위36도19분20초 동경126도19분50초
 하. 북위36도18분05초 동경126도26분50초
 거. 북위35도51분00초 동경126도28분00초
 너. 북위35도49분40초 동경126도21분30초
 더. 북위35도48분10초 동경126도21분50초
 러. 북위35도47분10초 동경126도25분00초
 머. 북위35도39분20초 동경126도24분20초
 버. 북위35도23분30초 동경126도20분50초
 서. 북위35도16분20초 동경126도15분00초
 어. 북위35도12분50초 동경126도10분00초

주17)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5 참조)

가. 북위37도30분00초 동경126도00분00초
 나. 북위37도31분20초 동경126도03분02초
 다. 북위37도30분00초 동경126도03분02초
 라. 북위37도30분00초 동경126도16분21초
 마. 북위37도23분30초 동경126도20분40초
 바. 북위37도19분38초 동경126도13분22초
 사. 북위37도18분15초 동경126도03분55초
 아. 북위37도09분40초 동경126도04분25초
 자. 북위37도06분50초 동경126도07분45초
 차. 북위37도05분30초 동경126도22분00초

별표 12 제2호에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퍼. 법 제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구보증 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112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	-------------------	-----	-----	-----

허. 법 제8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구보증 금 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어구보증금 의 환급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112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	----------------------------	------------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① (생 략)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어선 중 <u>양식장형망선</u> 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관리선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정해야 하며, 자원관리채취선은 이미 마을어업 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과 그 어선을 대체하여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제14조(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마을어장형망선</u> ----- ----- ----- ----- ----- ----- -----.
제26조(신고어업)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26조(신고어업)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도구를, 수면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업시기와 조업구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u>
제32조(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해양수산부	제32조(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

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이나 금지를 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제38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③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업

-----.

1. ~ 6. (현행과 같음)

7.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수산물 수출의 제한이나 금지. 이 경우 수산물 수출의 제한이나 금지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38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①

법 제60조제2항-----

-----.

② 법 제60조제2항-----

-----.

③ 법 제60조제2항-----

의 종류별 그물코 규격의 제한
은 별표 8과 같다.

④ (생 략)

<신 설>

<신 설>

-----.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어구보증금의 부과 대
상)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부표(이
하 “어구등”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 또는 부표를 말한다.

1.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
발

2.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
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제49조의3(보증금환급의 예외 적
용) ① 법 제81조제2항 단서
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
연재난으로 인하여 어구를 반환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구등을 구입
한 자가 어구등을 반환할 수 없
는 경우 법 제83조제1항의 어구
보증금관리센터에 어구보증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어구보증금 환급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4(어구보증금관리센터 설치·운영) ① 법 제83조제1항의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둔다.

② 법 제83조제3항에서 “어구보증금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74조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49조의5(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 등) ① 법 제84조제2항에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구 회수 및 재활용 지원사업
2. 어구보증금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활용

제58조(보조 대상사업) 법 제93조 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	3. <u>어구보증금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어업인 지원</u> 4. <u>어구보증금 관련 산업의 육성</u> 5. <u>그 밖에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사업</u> ② <u>어구보증금관리센터가 제1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u> ③ <u>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정하여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u> ④ <u>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사업 운영실적 또는 경비지출 명세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제58조(보조 대상사업) ----- -----
--	--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수산물 처리·가공·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5. ~ 17. (생 략)

<신 설>

-----.

1. ~ 3. (현행과 같음)

4. 수산물·수산부산물의 -----

5. ~ 17. (현행과 같음)

제74조의2(업무의 위탁) ① 해양
수산부장은 법 제101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수
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또는 「어촌·어항법」 제57조
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2.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폐어
구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

3.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어구
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

4.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어구
보증금관리센터의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
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 11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u>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u>용을 고시해야 한다.</u> <u>1. 위탁대상 사업의 범위</u> <u>2. 위탁대상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u> <u>3. 위탁계약 기간(계약기간의 수정·갱신 및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u> <u>4. 위탁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u> <u>5. 위탁업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u> <u>6. 위탁업무 일부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u> <u>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처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u>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 112조</u>-----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512